

광주지방법원 2017. 6. 7 선고 2017가단506450 판결 [압류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전 문

원고파산자 주식회사 현진에버빌의 파산관재인 A

피고광주광역시 광산구

변론 종결2017. 5. 24.

판결 선고2017. 6.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9. 9. 18. 접수 제11409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9. 9. 18. 접수 제11411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다. 별지 목록 기재 (3)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9. 9. 18. 접수 제2706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파산채무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금 122,955,000원에 기하여 2009. 9. 9.자 압류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9. 9. 18. 접수 제11409호로,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9. 9. 18. 접수 제11411호로, 별지 목록 기재 (3)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9. 9. 18. 접수 제27067호로 각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파산채무자는 2010. 2. 9. 파산이 선고되어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강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위 같은 법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 위 같은 법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에 의하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국제징수나 지방세징수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니고, 그 기초가 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단채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징세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 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는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써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지라도 다른 채권자들과의 사이에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을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유지할 실익이 있고, 원고는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애기 위해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의 취소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방법을 통해 파산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해야 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그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룰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행정소송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파산채무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채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써 무효로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파산채무자의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해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양형권

별지